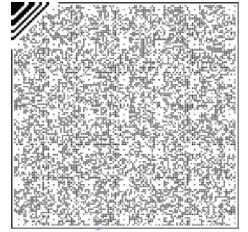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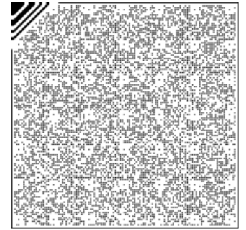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25.2.18.)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치료재료의 집행정지 적용 기간은 집행정지 결정일('25.2.14.)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고시 취소 청구 사건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결 결과는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해당 치료재료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에 해당되어,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으며,

- '한시적 비급여'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행위 급여 고시(제2024-297호, '24.12.31.) 전, 동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신의료기술을 결정신청한 요양기관만 해당합니다.

- 아울러, 고시 시행일('25.1.1.)부터 집행정지 결정 전일('25.2.13.)까지는 급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강문혜 행정사무관 김남효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5. 2. 24.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772 (2025. 2. 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급여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8 팩스번호 044-202-3933 / kmh88@korea.kr / 비공개(5)